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79.5%로 가장 높은바,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안 제7조)
- 다. 긴급전화 설치 (안 제12조)
- 라.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안 제14조)
- 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안 제15조)
- 바.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피해아동의 보호)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1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① 구청장은 보장원의 장 및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2조(긴급전화 설치)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